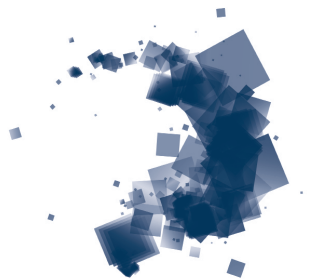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CONTENT

통권 21호 2011. 1

이슈 : 네트워크 트래픽 · 속도 분쟁

USA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7
JAPAN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16
CHINA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31

해외 분쟁 동향

GERMANY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40
UK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영국 지상파방송	46
FRANCE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56



해외 분쟁 이슈

네트워크 트래픽 · 속도 분쟁

| USA |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 JAPAN |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 CHINA |

중국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조 대 곤

USA

비가 오고 쌀쌀한 일요일 오후,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은 낯선 날씨 때문에 온 가족이 극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Netflix)¹를 통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기로 결정한다. 넷플릭스의 캘리포니아 본사에 위치한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넷플릭스와 콘텐츠 전송 계약 관계에 있는 레벨3 커뮤니케이션스(Level 3 Communications, 이하 레벨3)²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고객이 가입한 컴캐스트(Comcast)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안방까지 전달된다. 넷플릭스의 영화 콘텐츠는 DVD 수준의 고화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의 트래픽을 수반한다. 만약 특정 지역의 수많은 컴캐스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비슷

¹ 1997년 설립된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에서 DVD 렌탈 배송 서비스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2009년 기준 10만 개의 DVD 타이틀과 1,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 고객은 월정액제(7.99달러)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편집자주

² 레벨3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인터넷 백본 제공 및 콘텐츠 전송 등의 서비스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편집자주

한 시간대에 같은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 선택하고 이 모든 트래픽이 컴캐스트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안정적인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컴캐스트가 콘텐츠 전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컴캐스트는 이렇게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콘텐츠의 속도를 일부러 낮추거나 콘텐츠 제공업체에 추가로 회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201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을 대변하고 있다. 즉, 컴캐스트는 네트워크 품질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인터넷에도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같은 일종의 관문을 설정해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제공업체와 레벨3와 같은 콘텐츠 중계업체,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기반하여 컴캐스트와 같은 인터넷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가 어떠한 트래픽도 임의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특히 콘텐츠 타입이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브로드밴드가 빠르게 보급되자,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 지상파방송사들이 공동 설립한 훌루(Hulu), 넷플릭스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큰 콘텐츠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크타임대에 넷플릭스는 미국 내 전체 인터넷 다운로드 트래픽의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로 ISP들은 네트워크 품질 저하와 추가 네트워크 구축에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여러 전문가들은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터넷 비디오 콘텐츠 전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 등의 규제 당국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컴캐스트와 레벨3의 분쟁도 같은 선상에 있다. 2010년 11월 말, 컴캐스트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ontent Delivery

Network, 이하 CDN)³인 레벨3에 추가적인 트래픽을 컴캐스트 네트워크에 발생시키는 데 따른 회선 사용료를 요구했고, 레벨3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제안이 나온 지 3일 후에 어쩔 수 없이 컴캐스트의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 후 레벨3는 FCC에 이 사안이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넷플릭스의 영화 콘텐츠 전송을 둘러싼 레벨3와 컴캐스트 분쟁 배경과 양사의 주장,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등접속 계약 vs. 중계접속 계약

이번 두 회사 간 갈등의 본질과 쟁점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백본(Backbone) 네트워크 업체나 일반 고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들 간의 트래픽 교환과 관련한 계약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초기에는 소수의 대형 ISP들만이 네트워크를 소유 및 서비스했고, 이들이 서로 비슷한 규모의 트래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상호 무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동등접속 계약(Peering Agreement)이 주를 이루었다. 즉 특정 ISP의 트래픽이 조금 많더라도,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트래픽에 대한 정산은 따로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크고 작은 ISP들이 생기면서, 네트워크 규모와 실제 발생하는 트래픽 수준에 따라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는 중계접속 계약(Transit Agreement)이 생겨났고, 현재는 이 두 가지 계약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철저히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예컨대, 대규모 백본망을 보유한 AT&T, 버라이즌(Verizon), 스프

³ CDN 사업자는 인터넷상에 대규모의 서버를 구축해놓고 특정 콘텐츠 제공업체의 데이터를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송받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대도시 인근 서버에 고객 수요가 예상되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둘 경우 콘텐츠 전송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는 동시에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편 집자주

린트(Sprint), 레벨3 등 약 10개 사업자들은 소위 1그룹(Tier 1)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서로 유입과 유출되는 트래픽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호 합의하에 동등 접속 계약을 맺고 있다. 참고로,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레벨3는 2그룹(Tier 2)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컴캐스트와 서로 유사한 규모의 트래픽을 주고받으며, 오랫동안 동등접속 계약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특정 지역의 소규모 ISP나 CDN 사업자들은 대형 ISP들과의 트래픽 유입과 유출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중계접속 계약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한다.

컴캐스트와 레벨3 분쟁의 배경과 내용

넷플릭스와 같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업체들은 자사 콘텐츠가 고객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CD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CDN 사업자 중 한 곳인 아카마이(Akamai)사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최근 CDN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한 레벨3사와 지난 11월 초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레벨3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예상되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원활히 관리하는 데 자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형 ISP들이 보유한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 권한을 요청했고, 1,670만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한 컴캐스트도 이 가운데 한 곳이었다. 무난히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레벨3의 예측은 빗나갔다. 컴캐스트는 그동안 레벨3와 유사한 규모의 트래픽을 주고받아 동등접속 계약 관계가 성립했지만 향후 레벨3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담해 전송할 경우 상호 간의 트래픽에 큰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중계접속 계약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레벨3로부터 회선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컴캐스트 측은 다른 대부분의 CDN 사업자들도 정당한 협상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중계

접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레벨3에 부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레벨3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사실 이와 같은 컴캐스트의 주장을 레벨3 측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 문제는 망 중립성 원칙과는 상관없이 두 회사 간의 정상적인 트래픽 교환 협상 과정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레벨3의 주장은 확연히 달랐다. 양사 간의 트래픽 불균형은 컴캐스트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고객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원하고 이용할 때 발생하고, 레벨3는 이 트래픽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계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컴캐스트가 자사 가입 고객에게 월정액의 인터넷 이용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사 네트워크에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콘텐츠 제공업체한테도 차별적으로 회선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 인터넷 칼럼니스트는 갈등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양쪽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들을수록 더욱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하며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컴캐스트의 주장: 트래픽 교환 협상 과정일 뿐, 망 중립성과 무관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된 논쟁에서 컴캐스트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규제 당국에 맞서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컴캐스트는 이번 사안만큼은 망 중립성 원칙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레벨3나 소비자단체들이 망 중립성 원칙 문제와 결부해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컴캐스트가 FC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현재 컴캐스트 가입 고객의 넷플릭스 사용 패턴을 감안할 때, 레벨3가 컴캐스트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래픽이 컴캐스트가 레벨3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래픽보다 5배까지 많아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더 이상 '동등접속 계약'은 유지하기 힘들고, 새로운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회선 사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중계접속 계약’ 형태로 바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번 문제는 전적으로 트래픽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망 중립성 원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컴캐스트의 주장이다.

특히, 컴캐스트는 이러한 사업자 간 계약 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 고객들이 레벨3의 주장만 믿고 컴캐스트가 넷플릭스의 사업을 방해하고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캐스트는 전문 용어 없이 ‘동등접속 계약’과 ‘중계접속 계약’ 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했으며,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자사의 입장을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컴캐스트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2010년 4월 미 항소법원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컴캐스트에 대한 FCC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이 네트워크 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 권한을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한다면, 컴캐스트가 자사 네트워크 품질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트래픽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레벨3의 주장: 명백한 망 중립성 원칙 위반

반면, 레벨3는 이번 사안이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 없다는 컴캐스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트래픽은 전적으로 컴캐스트 가입 고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컴캐스트 고객의 인터넷 사용은 이미 컴캐스트가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책임지는 것이지 레벨3나 넷플릭스가 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경우 컴캐스트는 콘텐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레벨3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토머스 스토츠(Thomas Stortz)는 “컴캐스트 측의 회선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 1위 케이블TV 사업

자로서 컴캐스트가 갖고 있는 시장지배력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런 컴캐스트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모든 ISP들이 자사 고객이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인터넷 접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가트너(Gartner)사의 미디어 애널리스트 마이클 맥과이어(Michael McGuire) 역시 “만약 컴캐스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콘텐츠 전송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NBC와의 합병도 조건 없이 성공하게 된다면, NBC의 특정 프로그램 스트리밍 속도를 높이고 넷플릭스와 같은 다른 경쟁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속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레벨3 측은 이번 문제를 망 중립성 원칙 문제로 적극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캐스트에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업체가 직접적이며 강력한 경쟁자라는 점에서 컴캐스트가 자사의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레벨3와 시민단체 등 지지 세력은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을 통해서 ‘컴캐스트의 넷플릭스 차단 철회’를 외치며 조직적으로 컴캐스트와 FCC를 압박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1위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와 미국 최대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 업체 중 한 곳인 레벨3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컴캐스트가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관여되며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는 사실과 레벨3가 CDN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며 일어난 갈등이라는 점 등 두 회사의 특수한 상황이 연관되어 있다. 양쪽 당사자의 주장 모두 상당 부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결과를 예상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망 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면 서도, FCC가 시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분쟁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말 이번 분쟁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 FCC의 줄리어스 제나초스키(Julius Genachowski) 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FCC의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례와 망 중립성 원칙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분쟁이 직·간접적으로 FCC의 망 중립성 규정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최근 여론 흐름과 사업자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입장, 그리고 이번 컴캐스트와 레벨3 간의 갈등 원인 등을 FCC가 어떻게 반영하고, 얼마나 강력한 수준의 망 중립성 원칙을 명문화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KT가 자사 3G 네트워크상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사용 가능 여부를 요금제에 따라 차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 중립성 관련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때 애플(Apple)이 자사 앱스토어(App Store)에 스카이프(Skype)와 같은 VoIP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등록 승인을 거부하면서, 통신사와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쟁이 생긴 적이 있다. 또 유선 인터넷에서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TV, IPTV 등 고용량 콘텐츠 전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 간 트래픽 관련 갈등이나 특정 콘텐츠 전송 속도 차별 등,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따라서 FCC의 망 중립성 원칙 규정과 컴캐스트와 레벨3 간의 분쟁 해결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CNet.com(2010. 11. 30). Understanding the Level 3-Comcast Spat (FAQ)
Comcast Voice Blog(2010. 11. 29). Comcast Comments on Level 3.
Comcast Voice Blog(2010. 12. 7). 20 Q's-with Accurate A's-About Level 3's Peering Dispute.
Computerworld(2010. 11. 29). Comcast Demands Fees for Web Movie Viewing, Level 3 Says.
New York Times(2010. 11. 29). Netflix Parter Says Comcast 'Toll' Threatens Online Video Delivery.
New York Times(2010. 11. 30). FCC Investigates Complaint Against Comcast.
Slate.com(2010. 12. 2). Will Comcast Destroy New Neutrality?
ZDNet.com(2010. 11. 30). Comcast-Level 3 Fight Goes Public: Is This Really about Net Neutrality?
ZDNet.com(2010. 11. 30). FCC Looks Into Level 3, Comcast Content Dispute.
ZDNet.com(2010. 12. 2). The Internet at Risk: A Return to the Ma Bell Era.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안창현

1년 넘게 통신업계를 뒤흔든 ‘히카리노미치(光の道)’ 논쟁이 일단 막을 내렸다. 2015년까지 고속 인터넷 이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빛의 길’을 의미하는 히카리노미치 구상. 그러나 대립은 비전 자체보다는 실현 방법을 둘러싼 NTT 조직 형태에 집중됐다. NTT가 보유한 광통신망을 분리해 새로운 회선사업자에게 맡겨 공평하고 공정한 회선 대여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현행 요금보다 크게 낮은 월 1,400엔에 제공할 수 있다는 소프트뱅크(Softbank)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당시 총무상의 지시로 히카리노미치 구상 실현 방안과 NTT 경영 형태를 논의해온 총무성의 ‘글로벌시대 ICT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는 지난 11월 30일 NTT의 광통신망 부문과 다른 부문 간의 인사, 정보 교류를 금지하는 기능 분리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국 NTT 조직 개편은 다시 연기됐다.

이 글에서는 우선 NTT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본 뒤, 히카리노미치 구상을 정리한다. 이어서 히카리노미치 구상의 실현 방안을 담은 ICT 태스크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연구원(도쿄 대학교 박사과정)

포스 최종 보고서를 중심으로 광통신망을 둘러싼 NTT와 소프트뱅크의 주장, 특히 NTT 분리안에 초점을 맞춰 통신사업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살펴본다.

@ NTT 재편론: 민영화에서 ‘히카리노미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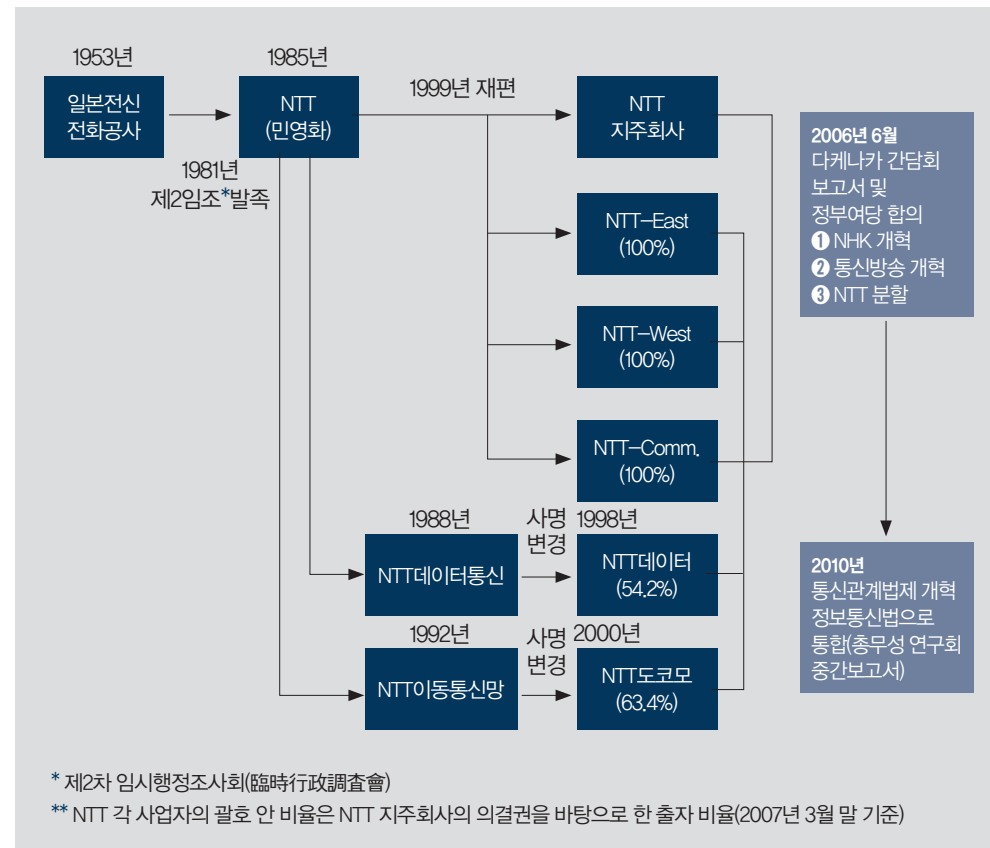
NTT 분할론 혹은 NTT 재편론은 1981년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NTT가 민영화된 뒤, 논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우정성(현 총무성), 통신사업자, 미통상대표부(USTR)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여했고, NTT 그룹은 결국 1999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NTT 지주회사는 NTT히가시니혼(NTT東日本, 이하 NTT-East), NTT니시니혼(NTT西日本, 이하 NTT-West), NTT커뮤니케이션스(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를 완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NTT데이터(NTTデータ)와 NTT도코모(NTTドコモ)도 지배하고 있다.

이후 NTT 재편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6월까지 방송과 통신의 제도 개혁을 논의한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¹에서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서는 가입자 회선망 분리론, 완전 분할론 등이 제기됐고,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2006년 6월 총무성과 자민당, 공명당에서는 재편 논의를 2010년 시작하는 것으로 타협, 논의는 다시 미뤄졌다.

한편 2009년 9월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NTT 재편 문제는 또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정권 공약)에 재편 문제가 포함됐으며, 12월 하라구치 총무상은 ICT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제시하는 ‘ICT 유신 비전’을 발표했다. 지역 재생, 고용 창출, 환경 부하 경감 등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그 가운데 2020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히카리노미치 구상도 내걸었다.

¹ 당시 총무상의 이름을 빌려 ‘다케나카 간담회(竹中懇談會)’라고도 불린다.

〈그림 1〉NTT 민영화 재편 과정



출처: 〈エコノミスト〉(2007. 8월. 7日), p.75.

하라구치 총무상은 2010년 3월 개최된 총무성의 정부3역 회의²에서 2020년은 너무 늦다며 보급률 100% 달성 시기를 5년 앞당겨 2015년에 실현하고, NTT 경영 형태를 포함한 히카리노미치 실현 방법을 ICT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² 정부3역 회의는 각료,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 상황

왜 NHK 분할, NTT 재편이 문제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NTT의 시장지배력을 엿볼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우선 201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고속 인터넷 계약 수는 3,302만 건이었다. 이 가운데 FTTH(Fiber To The Home)가 1,780만 건,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 974만 건, CATV 인터넷이 532만 건, 기타 17만 건으로 FTTH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광통신망 인프라 정비율은 91.6%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 443만 가구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33.4%(1,780만 건)에 머물고 있어 정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통신망 인프라 정비율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만 FTTH, ADSL 등 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요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는 ADSL과 FTTH의 월 이용료를 보면 잘 드러난다. ADSL의 월 이용료는 NTT가 3,538엔, 소프트뱅크가 2,918엔이다. FTTH는 NTT가 6,510엔, KDDI가 6,615엔으로 ADSL에 비해 단순 계산으로도 FTTH가 2,972~3,697엔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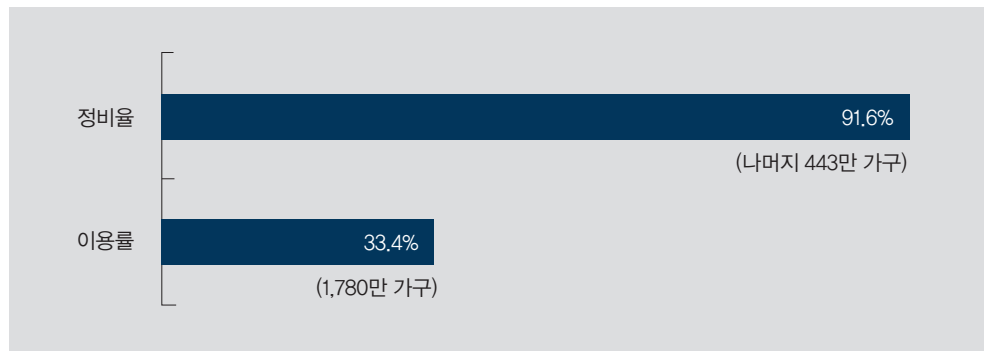
한편 사업자 간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자체 설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의미하는 설비 경쟁을³ 살펴보면, 우선 동축케이블(메탈 회선)은 NTT-East/West의 점유율이 99%로 전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통신 회선은 전력계 사업자, KDDI, CATV 사업자 등이 설비 경쟁에 참여하고는 있지만(22.7%), NTT-East/West의 점유율이 77.3%로 NTT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이다.

자체 설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설비를 대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가리키는 서비스 경쟁을 보면, ADSL에서는 경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FTTH에서는 NTT가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유

³ 설치한 설비는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 광통신망 정비율 및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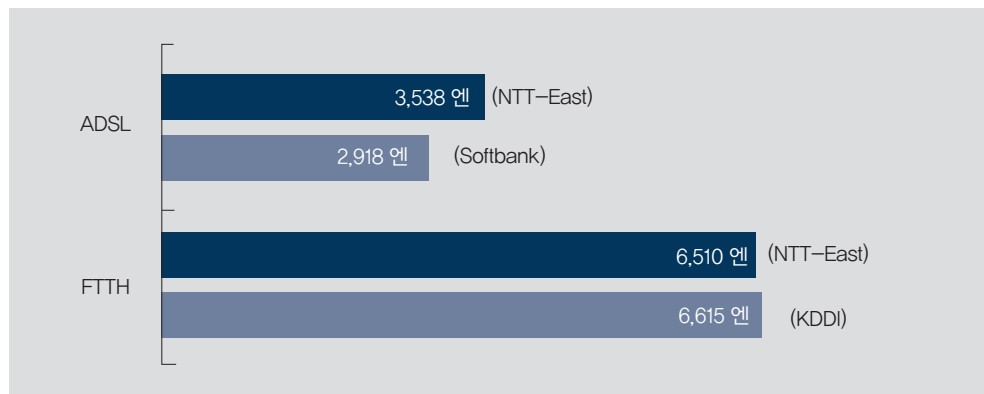
(2010년 3월 기준)



출처: 總務省 參考資料(2010. 11. 30), p.2.

〈그림 3〉 고속 인터넷 이용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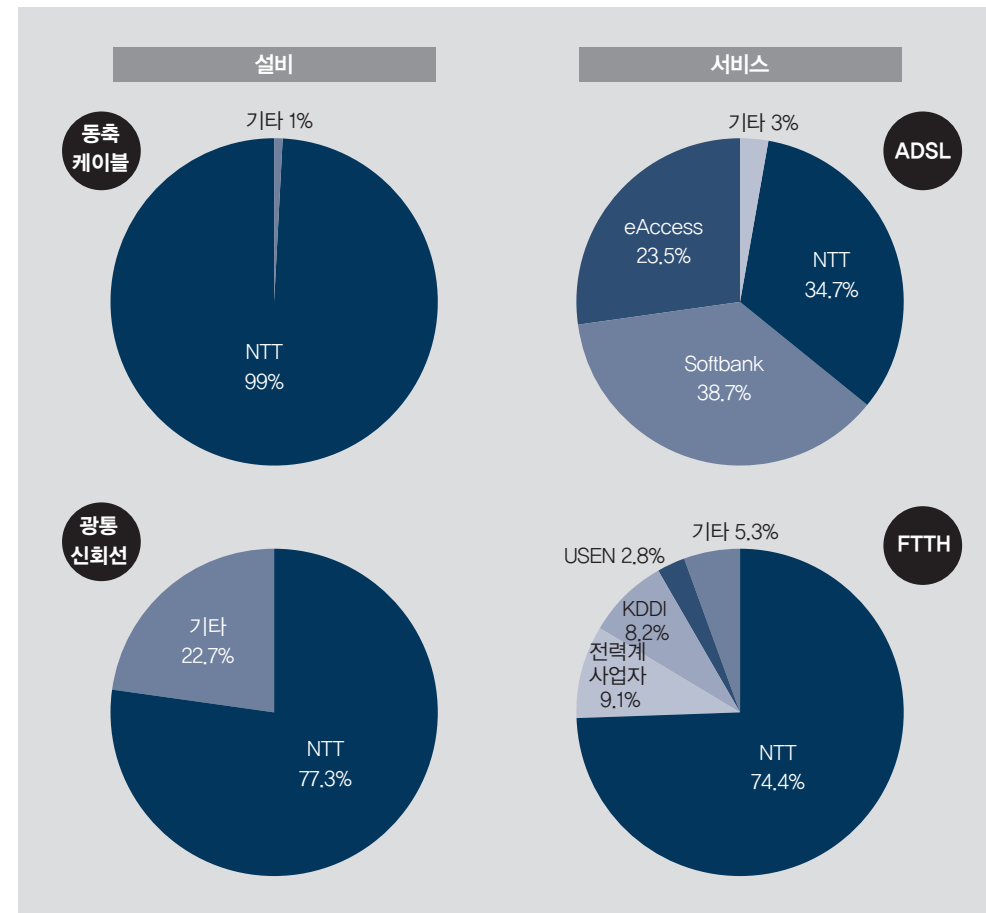
(2010년 3월 기준)



출처: 總務省 參考資料(2010. 11. 30), p.2.

지하고 있는 상태다. NTT-East/West의 시장점유율(34.7%)이 감소하고 있는 ADSL에서 소프트뱅크가 38.7%로 수위이며, eAccess가 23.5%, 기타 3%다. FTTH에서는 NTT-East/West가 74.4%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력계사업자 9.1%, KDDI 8.2%, USEN 2.8%, 기타 5.3% 등이다. NTT-East/West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사업자 간 설비와 서비스 경쟁 상황



출처: 總務省 參考資料(2010. 11. 30), p.2.

@ 광통신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1) NTT 대 소프트뱅크

광통신망을 둘러싼 갈등은 ICT 테스트포스 내의 워킹 그룹에서 표면화됐다. ‘과거 경쟁정책 리뷰 워킹 그룹’과 ‘전기통신시장의 환경변화 대응 검토 워킹 그룹’은 공동으로 사업자를 불러 히카리노미치 구상 실현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소

프트뱅크와 NTT가 대결을 벌였으며, 다른 사업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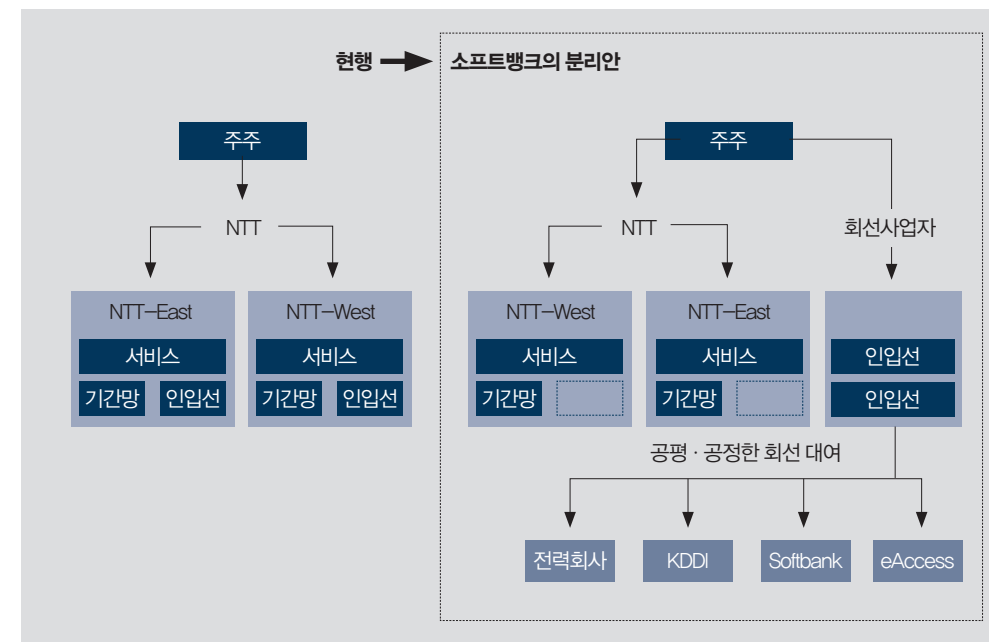
소프트뱅크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NTT가 보유하고 있는 동축 케이블을 폐지하는 대신 광통신망을 부설해 보수 비용을 줄인다, 둘째, 광통신망을 월 1,400엔에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NTT의 액세스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 이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손마사요시(孫正義) 사장은 의견 청취에 직접 참석해 지론을 펼쳤다. 소프트뱅크의 주장은 광통신망을 100% 정비한 뒤, 접속 사업으로 경쟁하자는 것이다. 손 사장은 세금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원-원 정책이라고 역설하며 월 1,400엔 산정 방법을 설명했다.

소프트뱅크의 산정 방법은 이렇다. NTT는 동축케이블과 광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 유지에 이중으로 비용이 든다고 전제한 뒤, 이를 광통신망으로 일원화할 경우,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등 매년 7,600억 엔이나 드는 동축케이블 관리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매년 4,600억 엔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2015년까지 공적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총 2조,000엔의 광통신망 정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프트뱅크가 제시한 NTT 분리안은 중계국에서 각 가정을 연결하는 NTT의 인입선을 그룹에서 분리해 설비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새로운 회선사업자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 회선사업자가 남은 10% 지역에 광통신망을 정비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가 자유롭게 설비를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즉 접속 사업 등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면 이용요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33.6%에 머물고 있는 광통신망 이용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⁴.

한편 소프트뱅크는 비용과 함께 경쟁 문제를 제기, NTT의 분할을 요구했다. 광통신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 경쟁을 하려면 중계국에서 지하도나 전신주를 거쳐 각 가정까지 물리적인 선을 깔지 않으면 안 된다.

⁴ 2010년 하반기에 ICT 태스크포스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에 논의를 집중했다.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에 손 사장은 새로운 회선사업자의 설비 투자액은 3.1조 엔, 부채액 1조 엔, 증자액이 500억 엔으로 예상되며, 다른 사업자가 출자하지 않는다면 소프트뱅크가 '리스크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며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림 5〉 현행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소프트뱅크의 분리안



출처: 《週刊東洋經濟》(2010. 7. 3), p.117.

그러나 이러한 설비를 가진 곳은 공사 시대의 자산을 물려받은 NTT와 전력회사뿐이다. 소프트뱅크도 한때는 광통신망 부설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연간 수백억 엔에 이르는 적자가 생기자 2009년 2월 그만두었다. 이후에는 NTT-East/West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플레츠 히카리(フレッツ光)’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NTT는 당연히 소프트뱅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소프트뱅크의 산정 방법과 고속 인터넷 보급 방안을 문제 삼았다. 우선 1,400엔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산출에서 얻은 결과라며 신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사 광통신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비용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고속 인터넷 보급 방법을 놓고도 소프트뱅크와 인식 차를 분명히 했다. 광통신망 설비가 이미 91.6% 이상 정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용률이라는 것이다. NTT는 히카리노미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즉 전자정부나 원

격 의료 등 고속 인터넷의 보급 촉진으로 이어지는 관련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2) 기타 통신사업자

NTT의 시장지배력에 이의를 제기해온 통신사업자의 주장은 제각각이었다. 적극 공세에 나선 소프트뱅크와 달리, 다른 통신사업자는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자체 광통신망을 보유한 전력계 사업자, CATV 사업자, KDDI 등은 처음엔 비판적인 주장을 폈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

전력계 사업자와 CATV 사업자는 거액의 설비 투자를 통해 광통신망을 구축해왔다. 만약 회선 사업을 NTT에서 분리해 새로운 사업자에 맡길 경우 광통신망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선행 투자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들 사업자는 회선 설비 경쟁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NTT에 이어 제2의 통신사업자인 KDDI도 처음엔 NTT 분할론을 제기했지만 곧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NTT와 대결해온 KDDI는 광통신망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전력회사의 고속 인터넷 사업을 확보해왔다. 2010년 2월에는 3,617억 엔을 들여 J:COM 매수 공방을 벌인 끝에 '지분법적용회사'⁵로 거느리게 됐다. J:COM은 일본 최대의 MSO(Multi System Operator,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1,278만 세대의 인입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NTT 분할이 실현되면 KDDI의 거액 투자는 전략상 큰 착오가 돼버린다. 또한 회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이점이며 선행 투자라는 이점도 날아가버린다. 결국 KDDI는 NTT 분할론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켜보기만 했다. 이러한 통신사업자들의 움직임도 소프트뱅크의 발목을 잡았다.

⁵ 지분법적용회사(Equity Method Investee)는 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순자산 및 손익의 일부를 반영하는 지분법이 적용되는 피투자회사를 말한다.

@ ICT 태스크포스 최종 보고

애초 히카리노미치 구상은 2009년 9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취임한 하라구치 총무상이 제창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정치 주도를 내건 민주당 정부의 정보통신 관련 비전이었다. 하라구치 총무상의 지시로 ICT 태스크포스는 논의를 거듭해 2010년 11월 22일 두 워킹 그룹이 공동 회의를 열어 히카리노미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골자를 제시했으며, 같은 달 30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⁶. 초점이 된 NTT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소프트뱅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회선 사업을 분리하지 않은 채 현재의 경영 형태에서 NTT-East/West의 회선 보유 부문과 다른 부문 간 인사, 정보, 회계 등의 벽을 두는 기능 분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소프트뱅크 구상: '불확실하다'

우선 소프트뱅크가 제안한 자본 분리를 통한 광통신망 회선사업자 설립 방안은 사업 성립 가능성, 동축케이블에서 이행하는 데 따르는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높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T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가운데는 소프트뱅크의 산정 방법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총무성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앞섰다.

대신 기능 분리가 타당하다고 했다. 기능 분리의 범위는 액세스망과 중계망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부문 간의 분리 장벽은 금융기관 등의 대응을 참고하라고 제언했다. 다른 통신사업자가 지적한 자회사나 위탁회사에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 NTT-East/

⁶ 정작 하라구치 총무상은 2010년 9월 퇴임했다. 애초 '히카리노미치' 구상은 손마사요시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라구치 총무상과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ICT 태스크포스에서 후퇴한 것도 하라구치 총무상의 퇴임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West에 부과된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 NTT-East/West에 부과된 규제를 위탁 자회사도 준수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2) NTT 조직 형태: '기능 분리가 현실적'

한편 ICT 태스크포스는 NTT의 위상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쟁 정책의 추진을 요구했다. 우선 설비 경쟁을 위해 망 부설 기반을 더욱 개방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1심(芯) 단위로 묶어 대여해온 광통신망 접속료를 분기 회선 단위로 바꿔 1분기 대여를 추진하고, 이에 맞춰 접속료도 다시 정하라고 요구했다. 1분기 단위의 대여가 가능해질 경우 FTTH 서비스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계망의 개방화도 요구, NTT-East/West 차세대 네트워크(NGN)의 플랫폼 기능(인증·네트워크 제어 기능 등)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TT 조직 형태는 NTT-East/West의 설비를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타 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됐다. NTT-East/West의 조직 형태는 구조적인 조치가 따르는 자본 분리와 구조 분리, 구조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 기능 분리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결국 구조적인 조치에 따른 NTT 주주에 미치는 영향, 실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기능 분리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3) NTT 규제 완화

NTT-East/West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일부 인정했다. 공정 경쟁 환경을 더욱 확보한 뒤,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환경 변화와 소비자 필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NTT-East/West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통신사업자가 요구한 종합적인 시장지배력을 근거로 한 SMP(Significant Market Power)는 규제 전반에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제도를 검토할 때까지 NTT-East/West와 자회사 간의 경영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평가와 향후 전망

이러한 ICT 태스크포스의 안과 최종 보고서에 소프트뱅크는 불만을 토로했다. 손 사장은 골자안 결정을 위한 워킹 그룹 공동 회의를 지켜본 뒤, 모호한 기능 분리로 2015년 히카리노미치 구상을 실현할 수 없으며 소프트뱅크가 제시한 방안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ICT 태스크포스의 결정을 비판했다. ICT 태스크포스 내에서도 보고서 내용에 이의는 없다고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8월)에서 후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히카리노미치 구상을 2015년에 실현한다는 목표 연도가 사라졌다. 또한 NTT의 기능 분리를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구체적인 시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총무성은 입장을 급선회했다. 2015년까지 광통신망 이용요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NTT가 다른 통신사업자에 대여할 때 접속료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인하 폭을 NTT에 맡길 예정이지만 충분하지 않을 경우 2013년에 NTT 광통신 회선의 분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무3역, 각 워킹 그룹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되는 정책 결정 포럼에서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결정한다. 이후 NTT의 광통신망 부문과 다른 부문의 업무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서 NTT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는 기능 분리로 마무리됐지만, 언제든지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33.4%에 머물고 있는 광통신망 보급률이 늘지 않을 경우, NTT 분할론이나 NTT 재편 논의는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桑原幸作(2010.12.4).NTT分割は棚上げ,ソフトバンクの誤算.<週刊東洋経済>.
 新保豊(2007. 8. 7). NTT民営化と2010年問題: 国内の構成接續政策より國際
 競争力の觀點を重視せよ.<エコノミスト>.
 平田正之(2010.12.9).`光の道`構想の最終報告は?<ICR View>.
 モ・ド革命以降の`失われた10季`:岐路に立つNTT・KDDI.<週刊東洋経済>
 (2010.7.3).
 ICTタスクフォースが`光の道`骨子案: 失速するソフトバンク案に逆轉はあ
 るか.<日經ニューメディア>(2010.11.29).
 光の道構想: 大きく後退…NTT分離見送り?.<毎日新聞>(2010.11.23).
 總務省ICTタスクフォースが`光の道`骨子案…NTT東西に`機能分離`.<日本
 經濟新聞>(2010.11.23).
 光回線經理など區分: 總務省, 作業部會最終案…NTT分社化は見送り.<讀
 賣新聞>(2010.12.1).
 NTT光回線網分離見送り,規制は強化…總務省作業部會.<朝日新聞>(2010.12.1).
 光回線`15年までに半額`…政府,NTTに要請へ.<日本經濟新聞>(2010.12.12).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ICT政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過去の競争政
 策のレビュー部會・電氣通信市場の環境變化への對應檢討部會
 (2010).`光の道`構想實現に向けて(骨子案)(2010.11.22).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89879.pdf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ICT政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過去の競争政
 策のレビュー部會・電氣通信市場の環境變化への對應檢討部會
 (2010.11.22).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89886.pdf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ICT政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過去の競争政

策のレビュー部會・電氣通信市場の環境變化への對應檢討部會
 (2010).`光の道`構想實現に向けて(取りまとめ案)(2010.11.30).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92951.pdf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ICT政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過去の競争政
 策のレビュー部會・電氣通信市場の環境變化への對應檢討部會
 (2010.11.30).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92952.pdf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이재민

중국에서 통신 관련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공업정보화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10월 말 현재 중국의 3G 누계 가입자 수는 3,864호로 2009년 말 1,226만 호에 비해 2,638호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국 최대의 모바일 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TD·SCDMA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아 1,698만 호에 달하며, 차이나유니콤은 1,166만 호, 후발 주자로 모바일 사업에 뛰어든 차이나텔레콤은 1,000만 호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자별로 3G 서비스 가입자 수가 모두 1,000만 호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 네티즌들이 3G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을 앞에 두고 사업자별로 서비스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다.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끊기는 현상이 잦다는 것이다. 현재 유선 광대역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광대역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의 홍보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업로드 속도와 관련된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진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중국 통신원(GN Consulting & Translation 이사)

이와 관련하여, 사오싱(紹興) 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실시한 3G 인터넷 속도 시험 결과, 차이나모바일의 3G 인터넷에는 업로드 정체 현상이 있고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표준 업로드 속도는 실제 테스트에서 각각 이론적으로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치의 14~32%, 2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사의 표준 수치가 허위 조작인지 아니면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차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처럼 큰 오차를 보이는 문제에는 통신사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3G 네트워크의 속도는 3G의 핵심 요소이며, 3G 시대는 곧 네트워크 속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네트워크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안정성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3G의 속도는 초기에 비해 상당히 느려졌다.

3G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속도가 느림’, ‘요금제 비용이 높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3G의 기능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통신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통신과 관련된 고발 사례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통신사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소비자들은 애프터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번한 인터넷 접속 중단 현상

인터넷 접속이 빈번하게 중단되면서, 서비스 해지 시의 초기 설치비 회수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징(景) 모 씨는 끊김 없는 10메가의 대역폭을 제공하겠다는 광대역 통신사의 홍보 내용을 믿고, 서비스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실제 연결 결과 끊김 현상이 잦았고, 이에 광대역 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자 초기 설치비를 지불해야만 10메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초 징 씨는 광대역 통신사의 행사 기간에 1년 이용료 800위안을 선불로 내고 해당 서

비스에 가입했고 초기 설치비는 무료였다. 하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사이트 접속이 자주 중단되었고, 심지어는 접속된 페이지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광대역 통신사가 약속했던 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자 징 씨는 광대역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나섰고 통신사 측은 징 씨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만큼 당초 무료 혜택을 받았던 초기 설치비 308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징 씨는 당 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약정했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인터넷 속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초기 설치비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합의를 보지 못하자 징 씨는 결국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비자보호위원회 담당자는 해당 광대역 통신사와 연락을 취해 조사에 나섰고, 결국 광대역 통신사는 징 씨가 지불한 800위안 중 광대역 서비스의 실제 사용 시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징 씨에게 돌려주었다.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약속한 대역폭은 이론상의 수치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운로드의 속도는 인터넷 환경과 연관이 있고 정상적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다운로드의 최고 속도는 대역폭의 8분의 1이며 실제의 손실을 더한다면 이 값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일부 광대역 통신사는 ‘한 건물에 100메가를, 한 세대에 10메가의 대역폭을 공급한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한 세대에 공급되는 대역폭과 건물의 이용자 수는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여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대역폭은 더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 밖에도 만약 ADSL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세대와 광대역 통신사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거리가 3,000m 이상일 때, 신호가 급격히 약해지며 인터넷 접속이 자주 끊기고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소비자보호위원회 담당자는 가입자가 일단 광대역 통신사의 광대역 서비스를 선택하면 쌍방의 서비스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유효기간 안에 통신사는 계약이나 법에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약정한 대역폭을 확보해주지 못하거나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현상은 계약 위반 사항이므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징 씨의 요구는 통신사가 약정한 서

비스의 수준을 보장하지 못해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장비는 서비스 가입 시에 무상으로 설치한 만큼 추후에 상응하는 비용이나 해당 장비를 다시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홍보용 속도는 3.1M, 실제 속도는 30KB

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속도가 광고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이 큰 불만의 하나다. 차이나모바일의 3G 서비스 이용자 천(陳) 씨는 업체 측에서 인터넷 속도가 3.1M/S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6개월을 사용하는 동안 30KB/S를 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최근,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권리 보호 사이트에 3G 무선 인터넷의 느린 속도를 견디다 못해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시 유선 접속으로 돌아간 사연을 올렸다.

현재 중국에서는 3G 무선 인터넷의 느린 속도에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달팽이 속도’라는 비판이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이트 ‘3.15 소비자 고발’에 널리 퍼져 있다. 이에 대해 차이나모바일 고객센터 담당자는 3G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네트워크 보급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론적인 인터넷 속도와 현실의 속도에 차이가 생기는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천 씨는 2010년 2월 말 베이징의 차이나모바일 텐통위안(天通苑) 영업소에서 3G 무선 LAN 카드와 카드 소켓을 구입했다. 그는 “3G 무선 인터넷의 다운로드 속도가 3.1M/S에 달한다는 차이나텔레콤의 광고를 보고 구입했다. 카드를 구입할 때 영업사원은 이 속도면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 그 무선 LAN 카드를 이용해 다운로드를 해보니 인터넷 속도가 20KB/S 정도밖에 안 돼 너무 느려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바이두닷컴을 여는 데 1분, 시나닷컴을 여는 데는 2분이 걸린다. 차이나텔레콤 3G 무선 LAN 카드를 사용한 6개월 동안 영화는 볼 생각도 못하고 업무나 일상적인 일도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sim 카드 값 20위안, 카드 소켓이 500위안이 넘는 데다 또 지역 인

터넷 300시간 패키지를 160위안에 구매했으니 3G의 가격은 매달 200위안인데 인터넷 속도는 너무 느리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역시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천 씨는 차이나텔레콤의 3G 무선 인터넷의 ‘광고상으로는 고속, 실제로는 저속’ 현상에 대해 여러 번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현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라는 모호한 대답밖에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3G 무선 LAN 카드의 인터넷 속도 지수가 도대체 얼마냐는 질문에는 항상 불확실하게 대답할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역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시 유선 접속으로 돌아갔다. 페이(裴) 씨 역시 천 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주셴차오(酒仙橋) 근처에 사는 페이 씨는 인터넷 속도가 50KB/S를 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차이나텔레콤에 문의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의 신호가 약할 수도 있으니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의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라고 했다. 인터넷 속도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확인한 인터넷 속도는 매우 빨랐다. 그렇지만 실제 다운로드의 속도는 여전히 50KB/S를 넘지 않았다. 고객센터센터 상담원들은 자신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고속 인터넷이라는 광고를 보고 차이나텔레콤의 3G 무선 LAN 카드를 구입했다. 3G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로서 차이나텔레콤은 더 이상 소비자를 농락하지 말고 다운로드 속도 3.1KB/S라는 광고를 취소하라고 부탁하고 싶을 뿐이다.”

천 씨는 얼마 전 차이나텔레콤의 야원촌(亞運村) 영업소를 찾아 3G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시 유선 접속으로 돌아와보니 3G보다 훨씬 빠른 서비스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밝혔다.

차이나텔레콤은 인터넷 속도가 지역별로 다르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고객 불만은 언론의 관심을 모았고, 언론 매체들은 차이나텔레콤의 고객센터센터에 3G 무선 인터넷의 속도 문제를 문의했다. 3G 무선 인터넷 전담 상담원은 차이나텔레콤의 3G 무선 인터넷은 100~200KB/S의 속도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이 속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신호가 약한 곳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톈통위안 근처에서 차이나모바일의 3G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인

터넷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지 질문하자 상담원은 “가능하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인터넷 속도가 100KB/S 이상 될 것이다”라고 했다. 천 씨의 상황을 문의하니 상담원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엉뚱하게 아마도 천 씨의 무선 인터넷 카드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

통신사업자들은 올해 들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 주원인으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를 든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객관적 원인이 된다 해도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통신사업자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분야의 전문가 류싱량(劉興亮)은 광고와 실제 인터넷 속도가 다른 것은 아직 중국 3G 서비스의 발전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신호 보급률이 불안정하다면 이용자의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며 통신사가 이러한 허위 광고를 고의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예상과 실제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약 광고 내용이나 소비자와 약정한 내용이 실제 현상과 다를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무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자안(北京嘉安) 변호사사무소의 주화이둥(蘇懷東) 변호사는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허위 광고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는 소비자협회에 고발할 수 있고 공상부서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점과 시사점

2G 시대, 이론적 최고 속도인 384Kbps는 무선이라는 매력으로 일부 소비자들에게 어

필했다. 그 후 3G 시대에 접어들면서 2M, 3M 심지어 7M라는 이론적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제시되자, 적잖은 네티즌이 부푼 기대를 안고 서비스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환경이 양호한 경우 차이나모바일의 TD 네트워크는 다운로드 속도 100KB/S, 차이나유니콤의 CDMA EVDO 네트워크는 120KB/S를 기록했고, 심지어 차이나텔레콤의 WCDMA 네트워크는 300KB/S 이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즉, 이들 세 네트워크는 실제로 유선망의 1Mbps ADSL 수준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인터넷 검색, 메일 송수신, 온라인 동영상 감상, 인터넷 채팅과 파일 다운로드 등 일상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2010년 한 해 3G 가입자가 200%를 넘어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입자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인터넷 접속 속도가 현격히 떨어졌다. 현재 중국의 세 가지 3G망은 모두 공유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 대역폭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동일 시간 접속자가 많아지면 평균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3G 기지국이 확충되기 전까지, 3G 네트워크의 평균속도는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월정액 방식도 네트워크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0년 4월 1일 이전 차이나텔레콤은 시간은 제한하되 트래픽은 제한하지 않는 월정액 방식을 적용했다. 결국 일부 사용자가 3G망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할 경우 장시간 네트워크 대역폭을 점유하게 되어, 자연히 기타 3G 가입자의 네트워크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3G 신호 문제 또한 네트워크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사업자들이 국내 주요 도시의 네트워크 구축을 마쳤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시 일부 지역에서는 3G 신호가 매우 미약하고, 그럴 경우 자동으로 2G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네트워크 속도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현재 3개 사의 3G 네트워크 속도는 2009년에 비해서는 빨라졌지만, 접속자가 가장 많은(오후 6~10시 사이에)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0KB/S에 그치고, 심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게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차이나유니콤은 인터넷 속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차이나유니콤의 요금 체계 때문에 가입자가 사업자 인프라보다 빨리 증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입자의 빠른 증가와 3G 기지국의 제한적 능력이 중국의 2010년 3G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의 발전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3G를 보급하려 했고, 불안정한 3G에 통신사업자들이 대대적 인프라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기술 체계 선택이 적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택에 앞서 사업자와 실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사업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한 이상, 서비스 보장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无线上网速度超慢原是‘蹭网’作怪(2010.9.8).中央电视台

回顾3G的2010年：谁拖慢了3G上网速度？(2010.12.6).西部硅谷

<http://net.zol.com.cn/207/2071010.html>

深入解析上网速度慢的原因及解决(2010.11.25).中国IT实验室

<http://www.enet.com.cn/article/2010/1125/A20101125781576.shtml>

陈子(2010.11.3).湖南移动(湖南株洲移动)手机上网速度慢<福建质量新闻网>

于斌(2010.6.9).三大运营商3G上网体验记 TD便宜速度慢<腾讯网>

http://www.openvoip.cn/renwu/2010/06/09/a_38312.aspx



해외 분쟁 동향

| GERMANY |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 UK |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영국 지상파방송

| FRANCE |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성 경 숙

독일의 수신료 징수 대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0월 수신료와 관련된 재판 결과가 발표되어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소송을 맡은 라이프치히 재판부는 두 명의 변호사와 한 학생이 수신료 징수에 반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방송 수신기기라면 수신료 내야

소송을 제기한 세 사람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라디오를 듣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신료 징수센터(Gebühreneinzugszentrale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하 GEZ)의 징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토론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 연방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기 중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비록 이들 기계를 라디오

미디어미래연구소 독일 통신원(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수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국민의 기본법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는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이고 이를 개인이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언론 수신료 관련 법률 조항(Rundfunkgebührenstaatsvertrag)에 의거해서도 합당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수신료 징수 대상 선별에서 해당 기기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차적이라는 지적이다. 즉 수신료 협약에서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기 소유자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실제로 수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것은 수신료 관련 법 조항과 평등법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신료 협약은 '평등법(Gleichbehandlungsgrundsatz)'에 저촉되지 않는다. 평등법에 따르면 고전적인 방송 수신 매체(라디오와 텔레비전)와 다양한 멀티 기능을 보유한 기기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는 물론 기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등하게 취급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신료 징수 대상과 월 징수금

2007년부터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은 '새로운 종류의 수신기기'로 규정되어 매달 5유로 76센트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상 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독일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새로운 종류의 수신기기'로 분류된 기기들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 반발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휴대전화와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에 이 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수신료는 무엇보다도 그 외의 다른 수

〈표 1〉 2009년 연방주별 수신료 지원 금액

(단위 : 유로)

연방주 방송위원회(Rundfunkanstalt)	전체 수신료
바이언 방송위원회(Bayerischer Rundfunk)	906,551,850,17
헤센 방송위원회(Hessischer Rundfunk)	415,670,077,33
중앙독일방송위원회(Mitteldeutscher Rundfunk)	596,147,726,64
북독일방송위원회(Norddeutscher Rundfunk)	978,025,063,95
라디오 브레멘(Radio Bremen)	43,555,310,33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위원회 (Rundfunk Berlin-Brandenburg)	368,148,432,08
잘란드 방송위원회(Saarländischer Rundfunk)	69,072,382,92
남서부방송위원회(Südwestrundfunk)	1,015,004,933,59
서부독일방송위원회(Westdeutscher Rundfunk)	1,165,096,397,98
ARD(종합)	5,557,272,174,99
ZDF(종합)	1,850,410,509,89
독일라디오(Deutschlandradio)	196,550,119,97
합계	7,604,232,804,85

〈표 2〉 2008~2009 총 징수된 수신료 금액

(단위 : 100만)

연방주 방송위원회	2009년	2008년	변화 정도
바이언 방송위원회(Bayerischer Rundfunk)	883,1	848,5	34,6
헤센 방송위원회(Hessischer Rundfunk)	404,9	390,3	14,6
중앙독일방송위원회(Mitteldeutscher Rundfunk)	580,7	559,9	20,8
북독일 방송위원회(Norddeutscher Rundfunk)	952,7	916,0	36,7
라디오 브레멘(Radio Bremen)	42,4	41,0	1,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위원회 (Rundfunk Berlin-Brandenburg)	358,6	342,9	15,7
잘란드 방송위원회(Saarländischer Rundfunk)	67,3	64,9	2,4
남서부 방송위원회(Südwestrundfunk)	988,8	954,8	34,0
서부독일 방송위원회(Westdeutscher Rundfunk)	1,134,8	1,092,7	42,1
독일라디오(Deutschlandradio)	196,6	183,1	13,5
ZDF(종합)	1,850,4	1,729,0	121,4
LMA	143,9	137,4	6,5
합계	7,604,2	7,260,5	343,7

신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금액이다. 현재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달 17유로 98센트, 라디오는 매달 5유로 76센트를 수신료로 내야 한다. GEZ는 2009년 약 4,200만 명의 수신료 대상 중 라디오와 텔레비전 소유자 각각 3,900만 명과 3,300만 명,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기기를 보유한 사람 약 24만8,000명에게 수신료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약 20만 명이 추가로 징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의 질타 대상이었던 GEZ가 오히려 이 사례로 수신료 징수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존재 위기감이 감돌던 GEZ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매년 제기된 수신료 관련 논쟁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논쟁을 잠재우고자 지난봄 새로운 수신료 징수 기기 추가 도입을 거론하는 방송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이어 발표된 관련 연구 자료들도 수신료의 징수 형태와 말 바꾸기에 급급한 징수 대상 기기에 대한 규정을 주요 연구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GEZ를 둘러싼 불신의 눈초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하다.



수신료 징수 모델 변경안, 문제는 없다

수신료 징수 대상에 관한 논쟁은 이번 판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 질지도 모르겠다. 지난 10월 새로운 수신료 징수 모델이 구체화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수신료 징수 관련 분쟁은 연방주가 지금까지 방송 수신기기별 징수 방식이 아닌 가구별 징수 방식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새로운 징수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수신료 징수 대상을 둘러싼 논쟁을 의식하여 앞으로는 수신기의 개수나 가족 수와 무관하게 한 가정당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새로운 계획안에서는 개인이 수신기 보유 여부만을 확인해주면 되고, 별도의 확인 신고가 없을 때에도 자동으로 수신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

는 징수 방식은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2010년 6월 초부터 새로운 징수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이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징수 방식 전환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GEZ의 합리적이지 못한 징수 방법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송 수신기기를 등록해야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거주지 정보를 입수한 GEZ가 일일이 가정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등록되지 않은 수신기기에 수신료를 물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 현재 수신료 징수 방식의 불합리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라는 사람이 고장 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어도 징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즉 언제든지 다시 방송을 수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기기를 소유한 시점부터 적발당한 시점까지 누적된 수신료를 징수했다. 세 번째로 방송 수신 기기가 다양화되면서 수신료 징수 액수가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기기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등록률이 떨어졌고 그 결과 수신료 징수 금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GEZ의 변화를 요구하는 비난 섞인 질책은 이렇게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더군다나 GEZ가 내세우는 징수 규정이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의 잦은 말 바꾸기도 한몫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만큼 독일 국민들의 GEZ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지는 않을 듯하다. 또한 새로운 수신료 징수 계획안은 공영방송사에 자신들의 조직도를 더 세밀하게 보강하게끔 독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독일경제위원회 대표들은 연방주 대표들의 협의가 있기 전 새롭게 만들어진 기획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제위원회 대표들은 새로운 기획안에서 무엇보다도 기업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연방주 방송위원회 대표들 또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새롭게 선보일 기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계획 중인 모델 전환은 독일 경제에 약 3억 5,000만 유로에 달하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어 새

로운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러한 법안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정치권에서 수신료 인상과 징수 방침을 두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 자체가 이미 공영방송의 중립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이 100% 방송 수신료에 의존해 운영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방송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와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치권 내에서만 조율하는 방식이 아쉽다는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013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신료 징수 계획안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대상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의 단초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이 새로운 계획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 들쭉날쭉한 징수 체계로 비난을 면치 못했던 GEZ와 공영방송사들의 신뢰 회복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하겠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아우르며 새롭게 등장한 계획안이 또 다른 단체의 반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악순환을 이어갈 것인지, 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 참고 문헌 ●

<http://www.zeit.de/digital/mobil/2010-10/gez-handy-gebuehren?page=1>
<http://www.stern.de/digital/urteil-zu-rundfunkgebuehren-gez-pflicht-fuer-computer-und-handys-bleibt-1617979.html>
<http://www.gez.de/e160/e161/e1457/gb2009.pdf>
http://www.focus.de/kultur/medien/rundfunkgebuehren-ministerpraesidenten-beschliessen-haushaltsabgabe_aid_564517.html
<http://www.zeit.de/2010/23/Rundfunkgebuehren>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영국 지상파방송

박 성 우

최근 영국 방송계는 B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컨트리파일>(Countryfile)의 전 진행자 미리엄 오릴리(Miriam O'Reilly)와 BBC 간의 고령자 차별(ageism) 관련 소송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BBC를 비롯한 지상파방송 채널들의 편성과 콘텐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BBC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부담하는 모든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도 시청률에 지나치게 집착해 특정 젊은 층 시청자들에게 점차 방송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문제점이 최근 BBC 트러스트의 평가에서 지적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미리엄 오릴리 사례와 방송 제작에서 연령차별 논란

BBC의 55세 이상 중·고령층 시청자 차별 논란은 2009년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컨트리파일>의 50대 여성 진행자와 리포터들의 갑작스러운 하차 결정에 따른 파장과

미디어미래연구소 영국 통신원(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 박사과정)

맞물려 있다. 그 사건 이전에 이미 BBC1의 당시 책임자였던 제이 헌트(Jay Hunt)는 BBC 시청자위원회에 출석해 BBC1 채널은 앞으로 젊은 시청자들을 중점적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발언 직후 제이 헌트는 <컨트리파일>의 방송 시간을 프라임타임인 저녁으로 옮기면서 인기 진행자이자 신뢰받는 저널리스트인 50대 중반의 미리엄 오릴리와 역시 비슷한 연령대였던 세 명의 여성 리포터를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시켰다. 당시 헌트는 BBC1이 <컨트리파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방송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50, 60대 시청자들에 집중한 것은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존 진행자들의 석연치 않은 퇴진과 젊은 진행자로의 교체는 BBC의 젊은 층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비쳐 오릴리와 비슷한 연령대의 고령층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BBC1은 꽤 많은 프로그램이 55세 이상을 주 시청자 층으로 삼아왔고 특히 일요일 밤 편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많은 중·고령층 시청자들이 최근 우려하는 것은 BBC 채널들의 방향성인데, 자신들보다는 젊은 층을 점점 더 선호하고 이에 따라 조금씩 방송과 편성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진행자 교체 건에 연루된 오릴리는 일간지 <데일리메일>(Daily Mail)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BBC의 고령자층 차별 정책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그동안 BBC 제작진과 심지어 사장에게 눈가 주름이 HD 방송 화면과 젊은 시청자들에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들었고, 자신이 더 이상 ‘젊고 아름답지 않아’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된다면 방송 하차 수개월 전부터 원치 않는 미용성형이나 보톡스 시술까지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BBC를 상대로 성차별과 연령차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텔레비전 방송 화면, 특히 시사 교양물에서 여성 진행자의 모습은 젊고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방송계의 비공식적인 내부 견해 혹은 은밀한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같은 장르의 TV 화면에서는 젊은 진행자의 모습만 필요한 것인지를 두고 많은 비난이 일고 있다. 그 프로그램은 후임으로 30대 초반의 맷 베이커(Matt Baker)와 줄리아 브래드버리(Julia Bradbury)가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오릴리는 BBC에서 25년간 일하며 수많은 상을 받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이번 하차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없었다고 한다. BBC 측은 단지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가 프라임타임으로 옮겨짐에 따라 더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진행자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이 헌트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결정을 놓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옵저버>(The Observer)지의 바바라 엘렌(Barbara Ellen)은 “미리엄 오릴리 하차 사건은 BBC로선 역겨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격분하고 있는 반면 <이브닝 스탠더드>(Evening Standard)의 사라 샌드(Sarah Sands)는 “이번 진행자 교체 결정은 전 진행자 미리엄 오릴리에 대해 BBC가 합법적으로 충분히 판단한 끝에 내린 제대로 된 결정으로 보인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극렬하게 반발하는 쪽에서는 BBC가 이번 사건으로 대중에게 그들의 은밀한 내부 제작 지침을 드러낸 것으로 결국 나이 든 여성은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이 없으므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도 속칭 ‘권장 사용 기간(shelf-life)’이 지난 퇴물 취급을 받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오릴리는 BBC2의 금요일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나이트>(Newsnight)에 출연해 “이런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며 결국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는 방송계의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논란이 지속되자 BBC가 비교적 인기 없는 한 라디오 쇼 진행자 자리를 제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불미스러운 논란을 덮기 위한 BBC 측의 책략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영국의 대표적 방송 콘텐츠 제작사인 토크백 템스(Talkback Thames)의 책임자 카밀라 루이스(Camilla Lewis) 또한 “이러한 관행은 극복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연령차별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BBC의 견해는 다르다. 제이 헌트는 BBC가 그동안 지나치게 나이 든 시청자들을 위주로 한 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실제 프로그램 내용부터 제작진 고용 문제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BBC는 계속해서 다양성에 대한 자문을 외부에서 받고 있으며 공영방송으로서 여전히 어떤 방송 채널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노인층을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BBC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스트릭틀리 컴 댄싱>(Strictly Come Dancing)에서 31세의 알레샤 딕슨(Alesha Dixon)을 심사위원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67세인 아리엔 필립스(Ariene Philips)를 전격 하차시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전체 속에 잘 스며들게 하는지에 있다고 보이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변화와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방송 편성에서의 노인층 소외 논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55세 이상 연령대의 방송 시청자들은 지나치게 젊은 층 취향 위주로 편성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조사 전문 기구인 유고브(YouGove)의 최근 조사 내용을 보면 영국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이 든 시청자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6명 중 1명꼴인 18%의 중·고령층 시청자만이 자신이 내는 수신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방송 콘텐츠에 만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42% 정도가 10여 년 전의 텔레비전 방송이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나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15%는 최근 방송이 지나치게 젊은 층 위주로 구성되어 적지 않은 액수의 수신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에 회의감마저 든다며 향후에는 아예 방송 수신을 중단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와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은 각종 인기 리얼리티 쇼나 쇼 프로그램이 영국 지상파방송을 거의 장악한다. 대표적으로 <아임 어 셀러브리티...갯 미 아웃 오브 히어>(I'm a Celebrity...Get Me Out of Here) 같은 리얼리티 게임쇼 시리즈가 매일 ITV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주말에도 ITV1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엑스팩터>(The X Factor)와 유명인과 전문 댄서들이 파트너를 이루어 라틴댄스 등으로 경쟁을 벌이는 BBC1의 <스트릭틀리 컴 댄싱> 등이 해마다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 내며 인기리에 방송된다. 주요 지상파방송 채널들의 이 기간 프라임타임 스케줄을

보면 20% 이상이 리얼리티 방송 포맷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BBC를 위시한 주요 방송사들은 프라임타임에 리얼리티 쇼나 텔런트 쇼 등의 특정 장르를 중복적으로 편성해 시청자를 모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일요일 밤에 방송되는 〈엑스팩터〉는 최고 1,700만 명의 시청자를 그 시간대에 TV 앞으로 모으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불어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스트릭틀리 컴 댄싱〉 역시 최고 50%에 이르는 놀라운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유고브에 따르면 특히 55세 이상의 시청자들은 이러한 리얼리티 장르의 프로그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연령대의 70%에 달하는 시청자들은 전체 방송 편성에서 리얼리티 장르의 방송이 너무 많다고 대답했다. 또한 55세 이상 연령대의 절반 이상은 리얼리티 쇼가 그들이 주로 시청하는 방송 시간대에 집중되어서 오히려 그 시간대에는 자신들이 볼 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반면 55세 이상의 단지 18%만이 자신이 내는 수신료가 제대로, 적절히 쓰이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다고 답했다. 사실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파노라마〉 같은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이 이전 한 시간 분량에서 현재 30분으로 반으로 줄었고, BBC 트러스트에서 지적한 것처럼 낮 시간의 편성 스케줄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집수리, 재테크, 쇼핑 등과 관련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는 수준 낮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노년층을 위한 잡지인 〈더 올디〉(The Oldie)의 편집인인 리처드 잉그램스(Richard Ingrams)는 일간지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와 한 인터뷰에서 “노인층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BBC의 모든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만스러운 편성을 책임진 BBC 간부들을 해고하고 BBC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고브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2%에 달하는 55세 이상 시청자가 최근 그들이 주로 시청하는 가족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방송물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리처드 잉그램스는 BBC뿐 아니라 ITV의 인기 드라마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하는데 〈다운타운 애비〉(Downtown Abbey) 같이 새로 시작한 인기 드라마 역시 스토리가 비현실적이고 모든 것을 〈업스테어스, 다운스테어〉(Upstairs, Downstairs)라는 이전 인기 드라마에서 베낀 성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TV 대신 DVD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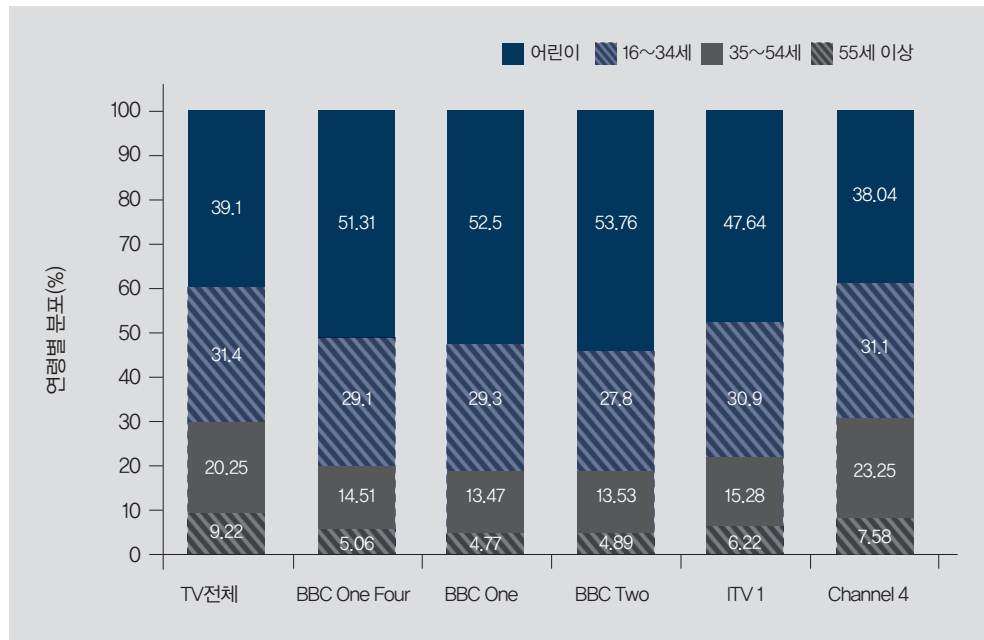
이에 BBC는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BBC1의 책임자였다가 지금은 채널4로 옮긴 제이 힌트는 일요일에 방송되는 인기 프로그램인 〈송스 오브 프레이즈〉(Songs of Praise)의 평균 시청자 연령은 67세이며 〈라크 라이즈 투 캔들포드〉(Lark Rise to Candleford) 역시 평균 시청자들의 나이가 59세에 이른다고 밝힌다. 특히 일요일 밤의 BBC1은 중장년층 시청자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BBC1은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55세 이상 시청자들을 위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수신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층인 데 반해 BBC3는 아예 모든 방송이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로 편성되어 있고, 수신료를 내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물은 독립적인 어린이 채널로 존재할뿐더러 라디오만 해도 라디오1, 2, 6, 7이 젊은 층이 주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BBC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통계 수치와 달리 실제 노인층 시청자들이 느끼는 프라임타임 방송 선택권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 보인다. 그동안 가장 열심히, 정확히 수신료를 내고 동시에 가장 열성적인 시청자 집단으로 자리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노력의 흔적은 찾기 힘든 것 또한 분명하다.

BBC 트러스트, BBC 편성 개선 요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최근 BBC의 감독 기구인 BBC 트러스트가 발표한 BBC 방송 채널별 서비스 평가에서는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거기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제작된 소비 지향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BBC1은 피크타임에 더 특징적이고 도전적인 편성을 통해 BBC의 공적 목적에 기

〈그림 1〉 시청자 연령 분포



출처: BBC 트러스트 홈페이지(2010)

여해야 한다.

- ② BBC2는 자체 제작하는 팩추얼,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른 채널들과 차별화해야 한다.
- ③ 낮시간대의 BBC1, BBC2 방송은 BBC 방송의 명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수준을 높여야 한다.
- ④ BBC 경영진은 BBC1과 BBC2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BBC 경영진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일부 시청 불가 지역과 소수자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⑥ BBC 경영진은 지역별 뉴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BBC의 공적 역할의 범위를 일정하

게 확장,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BBC4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전문성이라는 핵심 역할을 발휘해 BBC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 ⑧ BBC 경영진은 BBC4의 월드 뉴스 프로그램이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BBC1과 BBC2는 다른 채널에 비해서 특히 55세 이상의 중·고령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BC1은 평균 시청자 연령이 49세, BBC2는 51세로 나타났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 BBC1과 BBC2의 시청자 집단은 텔레비전 시청자 전체 평균보다 나이가 많은데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의 시청자는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BBC는 앞으로 젊은 층 시청자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는데 문제는 현재 노인층의 만족도는 이 통계 수치와 결과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령에 따라 미디어 소비 방식이 다르다는 데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 젊은 시청자들은 나이 든 시청자들보다 미디어 소비를 위해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덜하고 복합적인 다중 매체를 선호하므로 그들에게는 텔레비전 시청률이 실제 방송 프로그램의 소비량을 잘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글로벌 포맷 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유사한 포맷의 방송 프로그램이 증가했고 이는 곧 다양성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다.

BBC 트러스트의 이번 평가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55세 이상의 시청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장르인 시사 보도물(current affairs) 축소에 대한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뉴스나이트〉를 들 수 있는데 BBC2의 시사 보도물인 〈뉴스나이트〉는 최근 시청자가 줄고 방송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아예 프로그램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 유독 시끄러운 영국의 국내 정세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러스트의 지적이다. 연일 계속되는 대학 등록금 3배 인상

계획에 따른 대학생들의 시위, 복지 정책의 전면적 축소 계획에 따른 반발, 공공 개혁 드라이브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시사 프로그램이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BBC2는 시사 보도, 경제, 비즈니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BBC2 채널의 방송 면허(licence)도 갱신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퀘스천 타임>(Question Time)이나 <디스 위크>(This Week)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저녁 시간에 방송 중인 반면 아침 시간과 낮 시간에는 시사 교양물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BBC2의 오후 시간대는 다양한 영역의 방송 장르와 피크타임 정규 편성물의 재방송으로 많은 부분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시사점

이러한 사건으로 중·고령층 시청자들의 소외 문제와 나이 든 방송 종사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진행자를 젊은 시청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방송 미디어 산업계의 고질적인 편견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젊은 시청자들이 나이 많은 여성들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판단에서 온 것인데 연령차별은 노인층에게 시청자로서나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로서나 중요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젠더와 연령 차별 문제를 BBC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 문헌

- BBC Trust(2010. 11). <BBC One, BBC Two and BBC Four Service Reviews Final Report>.
- Daily Mail(2010. 10. 17). Liz Thomas: BBC1 Worries Too Much about Its Older Viewers... Says the Channel Chief in Countryfile Ageism Case.
- Telegraph(2010. 11. 16). Neil Midgley: Only 1 in 6 Older People Say TV License Fee Is Value for Money.
- YouGove(2010. 8. 25). <Television and Advertising>.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최현아

프랑스 이동통신사들은 2009년부터 새로운 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Quadruple Play Service, 이하 QPS)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QPS는 말 그대로 인터넷, IPTV, 일반전화, 모바일 전화 네 가지 서비스를 묶은 상품이다. 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프랑스의 통신 서비스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 Play Service, 이하 TPS)가 일반적이었다. 즉, 월 이용료를 내면 인터넷, IPTV, 일반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다. 트리플 플레이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QPS는 월 정액 요금을 내면 네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QPS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부이그텔레콤(Bouygues Telecom)이다. 프랑스 이동통신사 가운데 오랑주(Orange, 프랑스텔레콤 계열사), SFR에 비해 후발 주자인 부이그텔레콤은 2010년 5월 처음으로 QPS 상품인 이데오24/24(Ideo 24/24)를 선보였다. 월 회비 44.90유로(약 6만7,500원)에서 75.90유로(약 11만 4,000원)를 내면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 2시간(통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1년에 384유로

미디어미래연구소 프랑스 통신원(파리1대학 박사과정)

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부이그텔레콤은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도 신경을 썼다. 가입 고객을 위한 24시간 내 인터넷 개통, 늦을 경우 배상, 설치 문제가 발생할 때 기술자의 빠른 방문으로 해결, 이미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인터넷 해지 서비스 대행 등이다. 단 이 서비스에서 모바일의 경우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이그텔레콤에 이어 SFR도 QPS 상품을 선보였다. 일리미티크 압솔뤼(Illimythics ABSOLU)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 서비스를 약 99유로에 이용할 수 있다. SFR는 자사의 기존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는 20유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PS는 이동통신사로서는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미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가입한 고객들이 쿼드러플 플레이 상품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고객의 유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객으로서는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장 진입

부이그텔레콤, SFR 등 후발 주자들이 QPS 시장에 이미 진입한 반면 프랑스 통신 시장에서 시장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프랑스텔레콤은 2010년 8월에야 이 상품을 선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텔레콤의 계열사인 오랑주는 2010년 6월 QPS를 상품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자통신 및 우편 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이하 ARCEP)은 프랑스텔레콤의 QPS 상품화를 금지했다. 이유는 인터넷 가입자 900만 명, 모바일 가입자 1,800만 명을 보유한 프랑스텔레콤이 이 상품을 출시해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묶일 경우 시장 장악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6월 경쟁청(Autorite de la Concurrence)에서 프랑스텔레콤의 쿼드러플 상

품화를 허용했다. 경쟁청은 그동안 분리되었던 인터넷과 모바일 고객에 대한 크로스 셀링(Cross Selling)도 허용했다. 이는 이미 부이그텔레콤이나 SFR에서는 허용된 사항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에서 시장 지배자적 지위에 있는 프랑스텔레콤의 행보를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기관에서 QPS 상품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프랑스텔레콤은 곧 이 상품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프랑스텔레콤은 타 이동통신사들이 선점한 QPS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텔레콤은 '오랑주 오픈(Orange Open)'이라는 QPS 서비스를 8월 19일부터 상용화했다.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지정한 4개 번호는 무제한 사용 가능, 모든 번호 한 시간 사용 가능)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54.90유로에서 109.90유로까지 네 가지 스타일의 정액제를 제안했다. 요금은 모바일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르다. 또 저렴한 상품을 사용하길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서 '오픈 미니(Open Mini)'라는 이름으로 39.90유로 정액 상품도 소개했다. 이때 텔레비전이나 전화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 통신시장에서 9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시장 지배자적 지위를 차지하는 프랑스텔레콤은 그동안 신규 고객 가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만큼 '오랑주 오픈'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십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오랑주의 경쟁사인 부이그텔레콤은 서비스 상용화 1년 동안 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QPS 상품에 대한 경쟁청의 검토

경쟁청은 QPS 상품이 상용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 상승, 의무 계약 기간,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서비스 중단,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이다. 한편 경쟁청은 서비스가 통합된 상품 제공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 그룹화된 서비스 때문에 고객의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점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에서 인터넷과 몇 개의 모바일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기술적인 측면, 결합 상품에 대한 가격, 서비스 융합으로 인한 장점이 결국 하나의 이동통신사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효과로 특정 이동통신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프리(Free) 같은 신규 이동통신사는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쟁청은 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가입자의 통합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오랑주의 커플 상품을 제안하는 등 이른바 크로스 셀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SFR와 부이그텔레콤이 이 같은 방식의 판매를 이미 시작한 반면 오랑주는 그동안 경쟁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쟁청은 결국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시장의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SFR와 부이그텔레콤은 인터넷과 모바일 부문의 크로스 셀링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RCEP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경쟁과 관련한 샤텔법(la loi Chatel)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쿼드러플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재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RCEP는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같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이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텔레콤의 쿼드러플 플레이 의무 가입 기간 논란

프랑스텔레콤에서 '오랑주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QPS를 실시하면서 이 상품의 내용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어났다. 바로 의무 가입 기간 때문이다.

'오랑주 오픈'은 가입 고객들에게 24개월 의무 가입 기간을 명시했다. 이는 곧 고객들이 2년 동안 오랑주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동통신사는 2012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인 프리다. 신규 후발 주자인 프리는 오랑주의 의무 가입 기간으로 인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프리는 QPS 상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 상품이 '고객에게 어떤 장점도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프리는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 모바일 고객을 위한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 개시와 모바일 전화와 인터넷 프리박스를 통해 멀티미디어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부이그텔레콤과 SFR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QPS 상품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텔레콤의 의무 가입 기간 규정은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SFR와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지정된 프리는 경쟁청의 제소 내용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랑스텔레콤을 제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은 오히려 경쟁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소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 협회인 CLCV에서도 2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소비자들의 유동성을 막음으로써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고 3개의 이동통신사(프랑스텔레콤, SFR, 부이그텔레콤)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쟁청의 오랑주 QPS 상품에 대한 새로운 검토

지난 9월부터 경쟁청은 프랑스텔레콤의 '오픈 오랑주' 상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24개월 의무 가입 기간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오랑주 고객들이 2년 동안의 의무 가입 기간으로 인해 타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경쟁청은 특히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인 프리가 받는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쟁청은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QPS와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해지 조건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경쟁청은 오랑주가 제공하는 쿼드러플 상품이 고객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RCEP 역시 '오랑주 오픈'의 가입 기간 2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이다. 두 규제 기관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요금 제도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조사가 경쟁청의 자체 제소나 타 경쟁업체의 제소로 이어질 경우 프랑스텔레콤에서 상품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시사점

프랑스 이동통신사들은 QPS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을 포함한 서비스를 정액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은 고객 확보에서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이동통신사로 네 가지 서비스가 통합된다는 점은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한 업체로 시장이 쏠리면서 시장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프랑스텔레콤은 QPS를 상용화할 수 없었다. 프랑스텔레콤이 그동안 축적한 고객을 QPS 상품으로 통합할 경우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프리와 같은 후발업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도 서비스 질과 다양한 상품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요소가 있다.

이런 점에서 ARCEP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2012년 상용화될 프리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경쟁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프랑스텔레콤에 대해 허용과 규제를 적절히 안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GNT(2010. 5. 18). Ideo 24/24: Auadruple Play avec Appels Mobiles Illimités

<http://www.generation-nt.com/ideo-24-bouygues-telecom-appels-mobiles-illimites-actualite-1017231.html>

Info du net(2010. 5. 10). Bouygues Telecom: Quadruple Play avec Mobile Illimité pour 99 €

<http://www.infos-du-net.com/actualite/16970-mobile-illimite.html>

Journal du net, Le Auadruple Play d'Orange Inquiète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http://www.journaldunet.com/ebusiness/telecoms-fai/le-quadruple-play-d-orange-inquiete-1010.shtml>

Liberation(2010. 10. 4).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Enquête sur l'Offre Quadruple Play d'Orange

<http://www.liberation.fr/economie/01012294214-l-autorite-de-la-concurrence-enquete-sur-l-offre-quadruple-play-d-orange>

01Net(2010. 8. 11). Orange Open: le Auadruple alay à Partir de 57,90 Euros

<http://www.01net.com/editorial/519725/orange-open-le-quadruple-play-a-partir-de-57-90-euros>

Pcinpat(2010. 5. 28). Tout Illimité Quadruple-play: SFR Lance son Pack Absolu(MàJ2)

<http://www.pcinpact.com/actu/news/57247-sfr-pack-absolu-ideo-quadriplay.htm>

과월호 색인

권호	내용	국가
[창간호] 통권1호 2008. 9	[서문]디지털 융합 시대 방송통신 부문의 분쟁과 분쟁 해결 시스템	한국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통신사업자,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이용자 간의 분쟁	미국/일본
	FCC, 컴캐스트의 P2P 제한 조치 중지 결정	미국
	일, 보상금 문제로 대립하는 디지털 저작권 문제	일본
	캐나다의 뉴스 배급사 캐네디언 프레스, 언론재벌 캔웨스트와 전쟁 중	캐나다
	구글(Google)과 비아콤(Viacom)의 충돌	미국
통권2호 2008. 10	반독점법 실시에 따른 중국 통신시장의 변화	중국
	이동전화 조기해약 위약금 분쟁 집단소송	미국
	PC수신료 판결 동향 및 전망	독일
	정보통신법 제정을 둘러싼 분쟁	일본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분쟁	영국
	인터넷 라디오업계와 음반업계의 저작권 분쟁	미국
통권3호 2008. 11	공영방송의 온라인 사업 관련 갈등	독일
	공영방송 개혁 추진에 따른 갈등	프랑스
	ITV의 공공성 관련 분쟁	영국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일본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영국
	캐나다의 망 중립성 분쟁	캐나다
통권4호 2008. 12	온라인 비밀수색 허용 논란	독일
	인터넷 검열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미국
	중국 전신법 제정과정 분석과 향후 전망	중국
	EU 의회 및 영국 오프콤의 소비자정책 개선 동향	영국
	MVNO와 MNO 간의 접속협정에 관한 재정(裁定)	일본
	프랑스 디지털 2012 계획과 찬반 논의	프랑스
통권5호 2009. 4	주문형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논쟁	영국
	중국의 인터넷폭력 대응 논의와 전망	중국
	아이폰 이용료 분쟁을 통해 본 캐나다 무선통신시장의 위기	캐나다
	광대역 촉진 계획과 DPI 문제를 둘러싼 논란	미국
	CMMB vs. TD, 중국 모바일TV 패권 다툼	중국
통권6호 2009. 5	공영방송 편집의 자유 논란: 편집의 자유 대 기대권	일본
	BBC의 인도적 캠페인 방송 거부 갈등	영국
	온라인상의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	미국
	유럽연합의 모바일 로밍 요금 인하 규정을 둘러싼 논란	독일
	중국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분쟁	중국
	IPTV 통합 오픈 플랫폼 캔버스 프로젝트 출시 논란	영국

권호	내용	국가
통권7호 2009. 6	FCC, 유선전화 번호이동 기간 하루로 단축	미국
	오프콤, ADR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분쟁 중재	영국
	저작권 관리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JASRAC의 갈등	일본
	인터넷의 창작 보호와 상영 활성화에 관한 하도피법을 둘러싼 논쟁	프랑스
	버라이즌 vs. FCC, 기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한 논의	미국
	공중파와 케이블의 수신료 도입 논쟁	캐나다
통권8호 2009. 7	미국의 방송통신 분쟁 해결 제도 현황	미국
	CRTC와 CBSC: 캐나다 방송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두 축	캐나다
	프랑스의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둘러싼 갈등	프랑스
	디지털 영국을 설계하는 <디지털 브리튼>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불거진 갈등과 논의	영국
	위성방송사업자(BSkyB)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프리미엄(Setanta) 채널의 파산	영국
	Barnes vs. Yahoo, 판례를 통해서 본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한계 분쟁	미국
통권9호 2009. 8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일본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미국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및 규제	프랑스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영국
	FCC, 휴대폰 독점거래 조사 착수	미국
	방송통신 분쟁과 위반사항 처리기관 및 과정	중국
통권10호 2009. 9	구글보이스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과 FCC의 개입	미국
	아동보호 기술 시스템 확대로 규제강화 논란 중재	영국
	정보통신법안 논쟁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	일본
	청소년 인터넷 보호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	독일
	소비자의 통신 불만 해소를 위한 중재기구 CCTS의 현황과 전망	캐나다
	인터넷 서비스 속도 논란: 차세대 망 구축비용 부담과 사용 실태 공개	영국
통권11호 2009. 10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수신료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과제	일본
	BBC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확대: 사업영역 확대와 수신료 문제	영국
	페이스북 OPC의 갈등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쟁점과 전망	캐나다
	미 이동통신산업, 혁신, 경쟁, 요금 관행에 대한 논란	미국
	프랑스의 통신과 방송규제기구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프랑스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중국
[특집호] 통권12호 2009. 11	한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한국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의 역할	일본
	호주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호주
	종합토론: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방안	종합

권호	내용	국가
통권13호 2009. 12	끊이지 않는 망중립성 논쟁: 망중립성 강화 방침과 이동통신업계의 반발	미국
	스포츠 중계권 제도 변경: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 책무와 유료방송의 차별화 전략 논란	영국
	FCC의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관련 질의서와 향후 주요 분쟁 이슈 점검	미국
	TV 수신료 징수안을 둘러싼 TV 방송국 대 케이블 및 위성통신 사업자 간의 갈등	캐나다
	콘텐츠의 독점 상영권을 둘러싼 오랑주와 카날 플뤼스 분쟁	프랑스
	중국 동영상사이트의 불법방송 분쟁과 현황	중국
통권14호 2010. 6	무선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가능한가	미국
	3G 네트워크 포화와 망 중립성 논쟁	프랑스
	FCC의 방송사 주파수 회수 추진에 따른 갈등	미국
	영상물 자료 저작권 관련 분쟁	독일
	저작권 침해 UCC 운영자에 배상 판결	일본
	오프콤, 스카이TV의 유료방송 시장독점 제재	영국
통권15호 2010. 7	미국 구글사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 분쟁	미국
	FCC의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 공개와 이에 따른 분쟁	미국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광케이블 설치 방식 분쟁	프랑스
	NTT 재편을 둘러싼 통신사업자의 경쟁과 갈등	일본
	공정거래청(OFT)의 IPTV 플랫폼 캔버스 승인 논란	영국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개정안 논란	캐나다
통권16호 2010. 8	애플(Apple), 반독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직면	미국
	NHK의 시청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 소송	일본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논쟁	독일
	TV 콘텐츠의 인터넷 전송을 둘러싼 방송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갈등	영국
	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 사용료 관련 분쟁	프랑스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 재전송 대가 분쟁	캐나다
통권17호 2010. 9	오프콤 상호접속료 인하 발표에 따른 논란	영국
	NTT도코모와 생활문화센터의 MVNO 상호접속 분쟁	일본
	외비우스와 레위니옹 뉴메리크의 상호접속료 분쟁	프랑스
	컴캐스트의 NBC 합병 관련 분쟁	미국
	디지털 조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정체성 논쟁	캐나다
통권18호 2010. 10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영국
	버라이즌과 구글의 망중립성 정책 제안과 관련 쟁점	미국
	PC 이용 TV 수신에 대한 수신료 논쟁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둘러싼 논쟁	캐나다
	유튜브와 GEMA의 음원 저작권 분쟁	독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	중국

권호	내용	국가
통권19호 2010. 11	통신 감시와 도청 강화 논란	미국
	BBC 2011년 수신료 동결 결정과 논란	영국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위한 NTT도코모와 KDDI의 경쟁	일본
	구글과 중국 정부의 분쟁	중국
	CRTC의 개정 커뮤니티 TV 정책을 둘러싼 논쟁	캐나다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	독일
	포털 싸우후와 동영상 사이트의 저작권 분쟁	중국
통권20호 2010. 12	뉴스코프와 케이블비전의 재전송료 분쟁과 해결	미국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 논란	독일
	반스팸 법안 C-28의 주요 내용과 이슈	캐나다
	저작권 보호 리포트 관련 분쟁	프랑스
	IPTV 사업 갈등 상황	중국
	오프콤 구조조정과 권한 축소 논란	영국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저작자 인격권 분쟁	일본

